

“올림픽특별법 시행령 도 의견 반영하라”

염동열 의원 문화부 장관에 촉구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도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최광식 문화부 장관에게 “이번에 논의되는 특별법 시행령은 강원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시행령”이라며 “개폐회식장 및 선수대기시설, 대회직접관련시설, 대회여건조성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이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림픽파크와 올림픽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제대로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재청장에게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의 오대산 반환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민왕기기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강화되고 부당특약의 범위 및 보증서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하도급액이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적정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원도급자가 낙찰한 도급금액 중 하도급금액 대비 계약금액인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만 적정성 심사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확대한 것이다. 또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인 하도급률도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8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특약 유형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하위윤기자

하도급 건설업체 보호 대폭 강화

국토부, 하위법령 개정... 4000만원 미만 공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앞으로 원도급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크게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성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당특약이 추가되는 등 하도급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

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하도급률(원도급자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계약금액)이 82% 미만인 경우에만

적정성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또 공정거래관행 정적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및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는 상호협력평가 관계인 하도급 업체와 1000만~4000만원 규모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에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는 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이 밖에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한 뒤 유사 업종으로 등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현철